

서비스 이용 규정

[2020.03.1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장기요양 등급 판정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사랑 치매전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및 급여기준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및 부산광역시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본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서 비 스 운 영

제3조(운영개요) 본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치매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및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의 인지기능 향상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운영한다.

제4조(주요서비스) 본 센터에서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에 따라 낮동안 장기요양 수급자를 센터 내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기능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제5조(이용정원) 본 센터의 이용정원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증에 따른 18명으로 한다.

제6조(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 ① 온라인 홍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과 기관(<http://www.다사랑시니어.org>) 홈페이지를 활용한다.
- ② 오프라인 홍보는 관 내·외부에 비치된 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소식지 및 홍보지 배포를 활용한다.
- ③ 홍보 시 필수 작성 사항은 센터명, 급여 종류와 관련한 일련의 정보로 한다.

제3장 이 용 계 약

제7조(계약목적 및 계약기간)

<목적>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의뢰나 신청 시 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나머지 비용은 센터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센터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 ③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가의 7.5%를 본인이 부담한다
- ④ 간식비는 1일 1,000원으로, 경제적 여건에 무관하게 본인이 부담한다.
- ⑤ 매월 청구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의 본인부담금 15% 및 급여부분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계약을 해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9조(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 및 권리)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자 의무를 이행한다.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 의무를 이행한다.
- ③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를 이행한다.
- ④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권리>

-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④ 이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제10조(계약의 해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최소 2주 전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한다.

- ① 이용계약 해지 : 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최소 2주전까지 기관에 통보한다.
- ② 이용의 제한 : 센터장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 또는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정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보균자로 판정된 이용자
 -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이용자
 - 이용허가 목적에 위배된 이용자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이용자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것을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급여비용 수, 비급여 비용)는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5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제12조(서비스내용)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에 따른 서비스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 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들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셋집) 간호, 장루(창자셋집)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오그라들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기능회복훈련	
인지 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신체·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일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대화, 물품 (편지, 신문 등) 배포, 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 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인지기능향상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프로그램
		일상생활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및 의사 전달 대행	동작훈련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제13조(비용부담) ① 이용자별로 매월 이용일수를 확인하여 아래의 비용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매월 1회 이용자에게 납부 안내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의 경우 후불제로 실시하고 이용자는 납부안내를 받은 날의 말일까지 이용료를 센터로 납부한다.

② 비용계산 방법

- 급여 : 등급별 1일 수가(급여)금액×이용일수×본인부담비율(원단위 올림)
- 비급여(식사 및 간식) : 해당 금액×이용일수

제14조(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 ① 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의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 통보가 된 경우를 말한다.

② 평일(월~금)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 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일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 기준) 산정한다.

③ 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 안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비용가산) ①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또는 토요일에 제공한 급여는 30% 가산한다.

②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는 30%를 가산한다.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가산은 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료서비스 연계) ① 센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능회복 지원을 위한 촉탁의 진료를 포함한다.

②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질환 심화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치의의료기관이나 지역 병원으로의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며, 필요시 직원이 동행한다.

③ 이용자의 의료적 긴급상황 발생 시 119를 통한 긴급이송을 요청하며, 필요시 직원이 동행한다.① 이용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특별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환의 전염 우려 및 타 이용자의 권리 침해 사유를 제외하고 1인실(unit care)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특별보호가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용가산 조항에 따른다.

제18조(치매전담실 프로그램관리자) ① 센터는 치매전담실에 사회복지사를 프로그램 관리자로 전담 배정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규정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